

의안번호	제782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박봉순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1월 14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봉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2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14일

발 의 자 : 박봉순 · 이정범 · 유상용

김성대 · 김정일 · 박병천

박진희 의원

1. 제안 이유

- 아동·청소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 강화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들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환경조성 및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학교 교통안전 정책의 범위를 학교 내는 물론 학교 밖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까지 확대하고,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지도, 교통안전 환경조성 등 학생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담아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생 교통안전에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재정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나. 정의 규정에 ‘학생’, ‘승하차 구역’, ‘승하차 회차로’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2조)

다. 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라. 실태조사 세부 내용 명시(안 제5조)

마.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바.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사. 학생 교통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학교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4. “승하차 구역”이란 학생 등·하교를 위한 학생 수송용 차량이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승하차 회차로”란 학교 내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

생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 교통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학생 교통안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학생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3. 학생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 교통안전환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생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2.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학생 교통안전교육 운영 현황
4. 그 밖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지도) ①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정해진 차량 통로 이외의 운행 금지 지도
2. 학교 내 지정된 주·정차 구역 외 주차 금지 등 교내 주정차 안전지도

3. 학교 내 외부 차량 출입 통제에 관한 지도
4. 그 밖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및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의 안전한 보행에 관한 교육
2.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인라인스케이트·바퀴 달린 신발 이용 시 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 관련 교육
3. 보행 중 스마트폰·스마트패드·이어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교육
4.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을 위한 교통법규 및 교통·보행 안전 수칙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학생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8조(학생 교통안전 환경 조성)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 턱이나 보호난간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학교 내 차량 승하차 구역 및 승하차 회차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정 및 신호 위반·과속 단속 장비, 통학로 안전펜스 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 교육감은 학교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교통안전지

도 및 교육 등 학생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20155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2023. 4. 18., 2023. 10. 24.>

1~18 생략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22 생략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

② 삭제 <2018. 3. 27.>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1. 1. 12.>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2019. 12. 24.>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 교통사고처리법)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277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6. 8.>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①교육부장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 26., 2013. 3. 23.>

②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0., 2016. 2. 3., 2021. 3. 23.>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 삭제 <2015. 1. 20.>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0.>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 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5. 1. 20.>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2012. 3. 21.>
5. 삭제<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8조(학생 교통 안전환경 조성)제1항 및 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학생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